

## 약관변경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<b>제1조 (약관의 적용)</b> (생략)</p> <p><b>제2조 (가입대상자)</b>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&lt;추가&gt;로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</p> <p>.</p> <p><b>제3조 ~ 제6조 (생략)</b> (생략)</p> <p><b>제7조 (비과세처리)</b> <u>이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까지의 이자소득 등은 비과세 처리하고 만료일 이후 이자소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합니다.</u></p> <p><b>제8조~제14조 (생략)</b> (생략)</p>	<p><b>제1조 (약관의 적용)</b> (좌동)</p> <p><b>제2조 (가입대상자)</b>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(<u>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이상 2천만원을 초과한 자를 제외한다.</u>)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</p> <p><b>제3조 ~ 제6조(좌동)</b> (좌동)</p> <p><b>제7조 (비과세처리)</b> <u>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한다.</u></p> <p><b>제8조~제14조(생략)</b> (좌동)</p>	<p>-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</p> <p>-문구 표준화</p>

**[부 칙]**

- ① <생 략>
- ② <생 략>

**<신 설>**

**[부 칙 1]**

- ① <좌 등>
- ② <좌 등>

**[부 칙2]**

① [시행일] 이 특약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존가입자는 기존특약을 적용받습니다.

-부칙신설